

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
----------	---

제출연월일 : 2006. 7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이유

오창과학산업단지내 입주하는 원아의 유아교육기회 확대와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6.9.1.자 병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2006.9.1자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병설유치원 2개원 신설 (안 별표 6)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

□ 조례개정 변경 내용

○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

명 칭	위 치	개원년월일	설립사유
각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	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6-2번지	2006. 9. 1	유아교육 기회확대
비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	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구룡리 395번지	2006. 9. 1	유아교육 기회확대

□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 대비표
- 입법예고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
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별표 6의 오창초등학교유리분교장병설유치원란 다음에 각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비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각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	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6-2번지
비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	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구룡리 395번지

부 칙

이 조례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[별표 6]

유치원

현		행		개		정		안				
명	칭	위		치		명	칭	위		치		
오창초등학교유 리분교장병설유 치원		충청북도	청원군	오창면	유리						
< 신	설>					각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	충청북도	청원군	오창면	각리		
							646-2번지					
< 신	설>					비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	충청북도	청원군	오창면	구룡리		
							395번지					